

#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

I. 제 출 자 : 이천시장

II. 제출일자 : 2003. 9. 15.(2003. 9. 19. 산업건설위원회 회부)

III. 근거법령 :

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

IV. 검토내용

1. 제안이유

-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을 도모하고 이천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는 등 재활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,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이천시에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가급적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이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
### 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재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,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고, 안 제3조와 제4조는 작업장의 업종과 제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,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위탁의 운영·계약 기간을 정하였고, 안 제8조는 고용대상 장애인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관리직원의 작업장운영책임규정을 두었고, 안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, 안 제13조 내지 제16조는 시장의 승인 및 보고에 대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감독과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위탁취소 사항을 둔 조례안으로써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